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11.

김 정 희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김정희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**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본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·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,
-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·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【김정희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10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 김정희, 박종길, 김장관,
이진환, 장호섭, 박정환,
정순옥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·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(안 제4조)
- 라.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민법」 제779조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, 제8조,
-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”이란 부모가 사망·이혼·가출하거나,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·질병·정신질환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

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
2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
3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
4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 등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
2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상담
3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동행지원 서비스
4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

5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중복지원의 제한)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·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민법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

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